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영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4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09일
발 의 자 : 최영주 의원(1명)
찬 성 자 : 경만선, 김소영, 김정태,
김제리, 김춘례, 김태호,
노승재, 박기재, 안광석,
오한아, 최기찬, 황규복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정취소·면적조정·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함.
-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와 육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관광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정 요건에 맞지 않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 함(안 제8조제3항)
- 나.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제8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관광진흥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“스마트관광산업”이란 법 제47조의8에 따라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、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.

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.

제15조제1항제13호를 같은 항 제14호로하고 제13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스마트관광산업

제8조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,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 결과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·면적조정
·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8조제3항은 2021년
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(생략)</p> <p>1.~7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“스마트관광산업”이란 법 제47조의8에 따라 관광에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·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.</u></p>
<p>제4조(시장의 책무) ①·②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4조(시장의 책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.</u></p>
<p>제15조(재정지원) ① (생략)</p> <p>1.~1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13.</u> (생략)</p>	<p>제15조(재정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3. 스마트관광산업</u></p> <p><u>14.</u> (현행 제13호와 같음)</p>

제8조(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용) ①·② (생략)

<신설>

③ (생략)

제8조(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용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 결과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·면적조정·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